

정책토론회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CONTENTS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

- | 전주혜_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4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아이중심 분과위원장

환영사

- | 김미애_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6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

축사

- | 김종인_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8

발제

01. 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 11
: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의 필요성과 과제
| 허민숙_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

- 01 | 이 영_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31
02 | 구본창_ 배드파더스 대표 39
03 | 이시정_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변호사 43
04 | 노현선_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 변호사 51
05 | 조신숙_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57

별첨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전주혜입니다.

오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발제와 토론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하는 ‘양육비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내년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건수(1만6천73건)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주혜



지난 6월, 제가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양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실적인 제재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주혜**

환영사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오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주혜 의원님과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양육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별다른 사유 없이 아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양육자들의 고충을 함께 공감하며 있으며 건강한 보육 환경을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 제16조는 양육비 이행관리기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심판청구 및 추심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현황」에서 본인 동의비율은 '19년 4.4%, '18년 3.4%, '17년 7.5%로서 매년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미애



그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연체 및 체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유기 및 방임에 해당하는 위법임을 천명하고,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사회적 원칙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양육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해 보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동빈곤 예방과 한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미애**

축 사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전주혜 의원님과 黨 저출생대책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토론회 참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혼인 건수마저 줄어들면서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임신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마음껏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누구나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 사회 인식과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저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의 필요성과 과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제
01아동의 권리, 국가의 의무: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 마련의 필요성과 과제¹⁾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아동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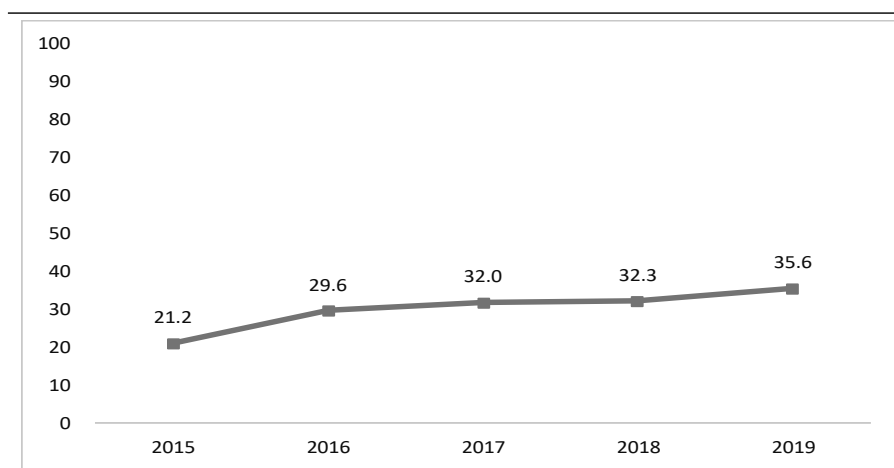
1) 양육비 이행 현황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률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혼·미혼 한부모 2,039명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에 달하였다.²⁾ 같은 조사에서 최근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5.2%에 이르고 있다. 비정기적이라도 최근 1년간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4.4%에 그치고 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들 중 양육비 이행 확보절차를 이용해 본 경험은 8.0%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같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 확약건수 대비 양육비 이행률은 미약하게나마 증가추세에 있다.

[그림 1] 확약건수 대비 양육비 이행

(단위: 년,%)



주: 양육비 실지급 시기를 고려하여 연도별 누적된 확약건수 대비 누적된 이행건수로 계산

1) 작성 중인 원고가 포함되어 있사오니 인용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18, p.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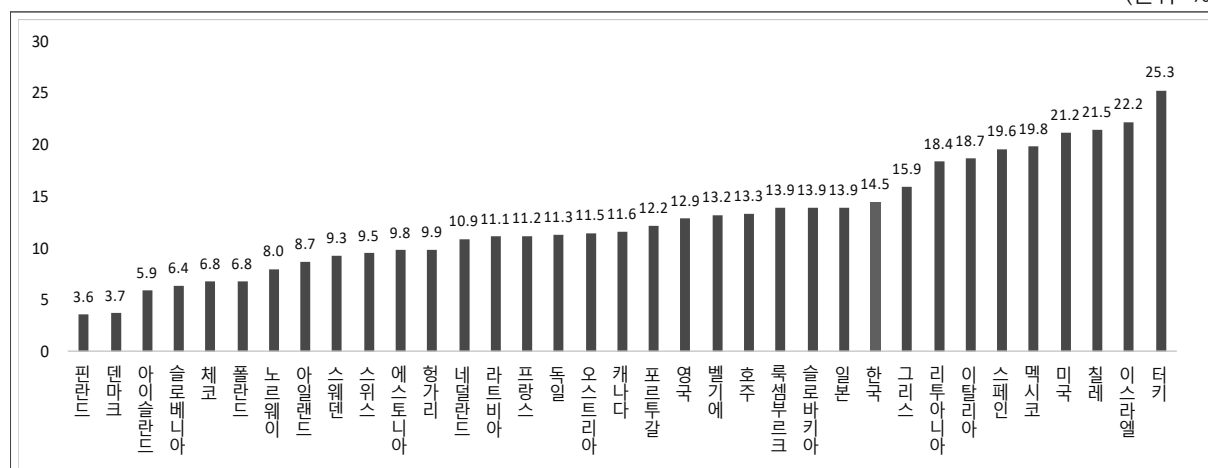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5년 평균 30%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지급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아동빈곤

아동빈곤율이란 아동(0~17세) 중 ‘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가정’의 아동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아동빈곤율이 3.6%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 덴마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폴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아동들이 비교적 안정된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국가별 아동 빈곤율

(단위: %)



주: 2017년 기준이며, 호주, 이스라엘은 2018년, 덴마크,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2016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 일본은 2015년 기준임

자료: OECD (2020),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Accessed on 16 March 2020)

특히 한부모·조손가구의 아동³⁾은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한부모·조손가구는 월 가구 근로소득이 평균 221.5만원으로 일반가구 413.7만원의 54%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⁴⁾ 일반 아동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총 2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이보다 낮은 164.8만원이다.⁵⁾ 물질적, 사회적 박탈상태⁶⁾

3) 한부모·조손가정이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음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p.506.

5) 같은 책, p.508.

6) 식생활, 의생활,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

에 대한 조사에서 한부모·조손가구는 평균 박탈점수인 1.58점을 훨씬 상회하는 5.11점을 기록하여 이들 가구에 속한 아동이 **상당한 수준의 박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⁷⁾ 아동의 결핍지수⁸⁾에 대한 조사에서 한부모·조손가구의 결핍지수는 52.9%로 일반가구 29.9%에 비해 23%p 높았다.⁹⁾ 주거환경에 있어 일반가구는 약 8%가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부모·조손가정의 경우 42% 이상이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월세부담이 23만원으로 다른 빈곤저소득 계층보다 높은 편이다.¹⁰⁾

2.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

양육비가 적시에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우선 비자발적인 이유와 고의적인 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지급하는 않는 경우이다.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고, 지급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낮은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단지 인식과 태도의 차이, 혹은 열악한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 정책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책의 차이란 1)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권한과 역할, 2)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강제 조치를 의미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차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양육비 이행 관련 정책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첫째, 양육비 지급이 연체되거나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가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양육비

31개 분야에서의 박탈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책, p.512 참조)

7) 같은 책, p.513.

8) 결핍지수는 17개의 결핍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말함.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책, pp.522-523 참조)

9) 같은 책, p.524.

10) 같은 책, pp.533-534.

지급 이행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가장 큰 처벌이 감치명령¹¹⁾이나, 다른 국가들은 구금, 벌금, 징역형, 혹은 병과 등의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해외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양육비를 직접 회수,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양육비를 공적 채무로 보는지, 아니면 사적 채무로 보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 간의 사적 채무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양육비 이행 강화 관련 정책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장 무거운 처벌: 감치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는 법원의 감치결정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명령을 결정한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하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규칙」 제86조제6항 및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그 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감치명령에 처해진 양육비 채무자는 잠적, 위장전입을 통해 감치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의 시간이 경과하면 감치결정이 무효가 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를 개정하여 감치집행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제6항의 감치 집행 예외 규정으로 인해 이를 악용한 위반자에 의해 감치가 집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외 규정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위 조항을 근거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치집행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11) 감치명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허민숙,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NARS 현안분석』, vol.49, 2019, 국회입법조사처, pp.4-5 참조.

3. 해외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현황

1) OECD 주요국 양육비 미지급 제재 현황

[표 1]과 같이 OECD 주요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다.

[표 1] OECD 회원국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

국가명	근거법률	양육비 미지급 지속 시 제재조치
호주	Social Policy Law (6.8.7. Prosecution of offences)	- 양육비 관련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위법 행위의 심각성 - 양육비 이행 강제 수단의 존재 여부 - 위법 행위가 미치는 파급 효과 - 위법행위가 회피(evasion) 및 방해(obstruction)와 연관될 때
벨기에	Penal Code (Article 391)	법원의 지급명령 불이행 시 기소
폴란드	Criminal Code (Article 209)	최장 2년의 징역형
프랑스	Criminal Code (Article 227-3)	최장 2년의 징역형
독일	German Criminal Code (Section 170 Non-payment of child support etc)	최장 3년의 징역형
포르투갈	Criminal Code (Article 250)	최하 2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의 징역형
영국 (스코틀랜드)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2000 (Section 17)	정해진 기간 동안 구금
미국	각 주정부 법	최장 14년의 징역형

자료: 1) 호주, Australian Government, 「Guides to Social Policy Law, Child Support Guide」,
<https://guides.dss.gov.au/child-support-guide/6/8/7>

2) 벨기에, European Justice, 「Maintenance Claim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aintenance_claims-47-be-en.do?member=1#toc_10

3) 폴란드, European Justice, 「Maintenance Claim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aintenance_claims-47-pl-en.do?member=1#toc_10

4) 프랑스, European Justice, 「Maintenance Claim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aintenance_claims-47-fr-en.do?member=1#toc_10

5) 독일,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

6) 포르투갈, European Justice, 「Maintenance Claims」,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maintenance_claims-47-pt-en.do?member=1#toc_10

7) 영국(스코틀랜드), Legislation.gov.uk., 「Child Suppor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Act 200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0/19/section/17> (검색일: 2020.7.6.)

2) 미국의 형사처벌 규정

대부분의 주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저소득 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지 않은 재정을 소요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조치를 강화해 왔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¹²⁾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양육비 채권자 혹은 정부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입증할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회에 제출된 보고서¹³⁾에 따르면, 수입의 부족, 또는 과거 수입 이력에 대한 정보 부족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불능력 부재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지원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육비 채무자가 현재 수급자이거나, 수감 또는 시설 입소상태, 영구적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이상 지불의무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위스콘신주의 예를 들면 법령 §948.22 Failure to support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스스로 지불능력의 부재(inability to pay)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구직하지 않는 것,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것, 수입 및 재산을 줄이는 일은 지불능력 부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당사자 스스로 압도적인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제시하며 자신이 지불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양육비 지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육비를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⁴⁾

모든 주정부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12) Moss v. Superior Court, 17 Cal. 4th 396, 950 P.2d 59 (Cal. 1998); State ex rel. Mikkelsen v. Hill, 315 Or. 452, 847 P.2d 402 (Or. 1993); Ex parte Roosth, 881 S.W.2d 300 (Tex. 1994)]

13) Center for the Support of Families, *Review of Statewide Uniform Child Support Guideline 2017: A Report to the California Legislature*, 2017, p.393.

14) 미국 텍사스 주의 NCP Choices Program은 자녀들이 양육비 국가지원 전력이 있거나 현재 수혜자인 경우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Texas Workforce Commission, *NCP Choices Program Guide*, 2012, https://peerta.acf.hhs.gov/sites/default/files/public/uploaded_files/NCP%20Choices%20Comp%20Guide%20draft%20%281-2012%29_nh_34_kf.pdf)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는 경범죄, 중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며 그에 따라 제재의 강도도 다르다. 예를 들어,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6개월을 선고받는 경범죄이지만, 아이다호 주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표 2] 미국 주정부별 양육비 불이행 관련 형사처벌 규정

주정부명	법률명	범죄명	최대 벌칙 규정
앨라배마	Ala. Code § 13A-13-4 Ala. Code § 13A-5-7 Ala. Code § 13A-5-12	A급 경범죄	1년, \$6,000
애리조나	Ariz. Rev. Stat. § 25-511 Ariz. Rev. Stat. § 13-604 Ariz. Rev. Stat. § 13-702 Ariz. Rev. Stat. § 13-707 Ariz. Rev. Stat. § 13-802	1급 경범죄	6월, \$2,500
		6급 중범죄	1년 6월
캘리포니아	Cal. Penal Code, §270	경범죄 (아동 유기 및 방임죄)	1년, \$2,000
델라웨어	Del. Code tit. 11, § 5-1113 Del. Code tit. 11, § 4205 Del. Code tit. 11, § 4206	B급 경범죄	6월, \$1,150
		A급 경범죄	1년, \$2,300
		G급 중범죄	2년
플로리다	Fla. Stat. § 827.06 Fla. Stat. § 775.082 Fla. Stat. § 775.083	1급 경범죄	1년, \$1,000
		3급 중범죄(4번의 연속유죄 판결, 1년 이상의 연체 또는 \$5,000 이상의 연체금)	5년, \$5,000
아이오와	Iowa Code § 726.5 Iowa Code § 902.9	D급 중범죄	5년, \$7,500
미시간	Mich. Comp. Laws § 750.165	중범죄	4년, \$2,000
미네소타	Minn. Stat. Ann. § 609.375	경범죄	90일, \$1,000
		중경범죄(90-180일 기간의 연체, 6-9차례의 체납)	1년, \$3,000
		중범죄(180일 이상의 연체, 9번 이상의 체납)	2년, \$5,000
몬테나	Mont. Code § 45-5-621	미지급	6개월, \$500
		미지급의 지속(주(州)를 벗어나거나 이전 유죄선고 전력)	6개월간 미지급 시, 10년형 및 \$5,000 지속적 미지급 시, 10년형 및 \$50,000
뉴햄프셔	N.H. Rev. Stat. § 639:4 N.H. Rev. Stat. § 651:2	경범죄	1년, \$2,000
		B급 중범죄(연체일수의 누적 1년 이상, 또는 \$10,000의 연체금, 재범)	7년, \$4,000

주정부명	법률명	범죄명	최대 벌칙 규정
뉴욕	N.Y. Penal Code, §260.05 N.Y. Penal Code, § 260.06	A급 경범죄	1년, \$1,000
		E급 중범죄	4년, \$5,000
아이다호	Idaho Code § 18-401	중범죄	14년, \$500
오레곤	Or. Rev. Stat. § 163.555 Or. Rev. Stat. § 161.605 Or. Rev. Stat. § 161.625	C급 중범죄	5년, \$125,000
로드아일랜드	R.I. Gen. Laws §11-2-1 R.I. Gen. Laws § 11-2-1.1	경범죄	6개월
		중범죄(\$10,000의 미지급금, 3개월 이상 미지급)	5년
유타	Utah Code Ann. § 76-7-201 Utah Code Ann. § 76-3-204 Utah Code Ann. § 76-3-203 Utah Code Ann. § 76-3-301	A급 경범죄	1년, \$2,500
		3급 중범죄(동종 전과, 24개월 중 18개월 미지급, \$10,000 연체금, 주(州)를 떠남)	5년, \$5,000
워싱턴	Wash. Rev. Code § 26.20.035 Wash. Rev. Code. § 9A.20.21	중경범죄	1년, \$5,000

자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Criminal Nonsupport and Child Support"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criminal-nonsupport-and-child-support.aspx>

각 주정부 별 법령

3) 주요국 출국금지 규정

가. 미국

「개인책임 및 업무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이하 「PRWORA」)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여권발급을 중지하거나 정지하고 있다. 「PRWORA」 Sec 370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Sec 452(k)를 개정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여권의 거부, 취소,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⁵⁾ 이 조항은 1997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양육비 \$2,500(한화 약 300만원)이상을 연체하였을 경우 여권이 제한된다. 여권을 신규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 신청이 90일간 중지되며, 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 사용이 중지된다. 연체 양육비를 완납하거나, 주정부가 여권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여권사용이 가능하다.

나. 캐나다

「가족명령 및 합의이행 지원법(Family Orders and Agreements Enforcement Assistance Act)」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양육비 3개월 이

15) Justia, 「Passport Procedures-Amendment to Restriction of Passports Regulation, 58496 [E6-16387]」, <https://regulations.justia.com/regulations/fedreg/2006/10/04/E6-16387.html> (검색일: 2020.7.6.)

상의 연체, 또는 연체금이 \$3,000(한화 약 265만원)이상일 때 여권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시 최대 \$5,000(한화 약 442만원)¹⁶⁾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진다. 양육비이행관리프로그램(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여권정지 처분이 해제된다.

다. 호주

「양육비이행법(Child Support(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 Part VA - Departure prohibition orders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시키기 위해 Child Support Registrar는 출국금지명령(Departure prohibition orders)을 발부할 수 있다. Child Support Registrar가 출국금지명령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② 양육비 채무자가 적절한 지급계획(satisfactory arrangements)을 세우지 않을 경우, ③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④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양육비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양육비 완납, 또는 양육비 지급 계획 제출 요건 하에서만 출국금지명령에 해제될 수 있다.

라. 노르웨이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한 출국금지 관련법은 「The Maintenance Collection Act」, 「The Medication and Procedure in Civil Disputes(The Dispute Act)」이며, 노르웨이의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에는 여행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에 따라 양육비 이행기관이 법원에 양육비 연체자의 출국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표 3] 주요국 양육비 미지급 관련 출국금지 조치

국가명	근거법률	요건	조치	해제요건
미국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최소 \$2,500 연체	- 여권발급 중지 - 기존 여권 정지(재발급, 사진교체, 이름변경, 페이지 추가 등 안됨)	- 양육비 완납, 또는 - 주정부에 의한 해제(deletes or excludes the case)

16) 환율기준일: 2020.7.6.

국가명	근거법률	요건	조치	해제요건
캐나다	「Family Orders and Agreements Enforcement Assistance Act」	3개월 이상의 연체, 또는 \$3천불 이상의 연체금	- 여권 즉시 반납 - 반납하지 않을 시 최대 5천불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병과	Maintenance Enforcement Program 의 요청 이후 여권정지 해제
호주	「CSRC Act」 section 17, section 17A, section 18A, section 30, Part VA 「Criminal Code Act 1995」 section 11.1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 양육비 완납 - 양육비 지급 계획 제출
노르웨이	「The Maintenance Collection Act」 「The Medication and Procedure in Civil Disputes(The Dispute Act)」	법원 명령	출국금지	- 양육비 완납 - 향후 지불보장

자료:1) 미국 Justia, 「Passport Procedures-Amendment to Restriction of Passports Regulation, 58496 [E6-16387]」, <https://regulations.justia.com/regulations/fedreg/2006/10/04/E6-16387.html>

2) 캐나다, Department of Justice, 「For people who owe support」, <https://www.justice.gc.ca/eng/fl-df/enforce-execution/pwo-pqp.html>

3) 호주,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Child Support(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277>

4) 노르웨이, NAV National Office for Social Insurance Abroad and The Collection Agency of the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Child Support Procedures in Norway」, Recovery of Maintenance in the European Union and Worldwide」, Heidelberg Conference 5, 8 March 2013, https://www.childsupport-worldwide.org/tl_files/downloads-abstracts/abstracts-ab-3-3-2013/Presentation_Bekkali_Rustad_final.pdf

4) 미국의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웹사이트 등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그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가. 연방정부

양육비는 주정부 소관 업무이지만,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은 특정 조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 감찰국이 개입하는 경우는 ①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녀와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② 총 미지급금이 \$5,000(한화 약 597만원) 이상이면서 자녀와 다른 주(State)에 거주하는 경우,

③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경우이다. 검찰국 웹사이트 「Status of Deadbeats」 항목에는 양육비 이행 법원명령을 위반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원이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신원정보는 다음과 같음: 사진, 생년월일, 신장, 몸무게, 체납액, 기소일, 주소지, 현재소재지(추정) 등임

[그림 3] 양육비 미지급자 지명수배 예시



나. 주정부

미국 주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주정부별로 공개정보 목록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략 공개 주기, 정보 공개 방법, 정보 공개 대상자에 대한 고지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메인주의 법률은 주무부처가 주정부의 신문에 양육비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을 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신문사와 근로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법률은 매년 최소 \$10,000(한화 약 1천2백만원)의 양육비가 연체된, 그러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신원공개 목록에는 성명, 최근 주소지, 체납액, 생년월일, 사진, 자녀 수, 그 외 채무자를 찾

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켄터키주의 법률은 ‘소재가 불분명한’, 또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사진을 관련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의 법률은 소재가 불분명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원을 신문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데, 이때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게시물에는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무료전화를 기입하고 있다. 또한, 게시 이전에 게시대상자의 가장 최근의 주소로 명단 공개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 이후 9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버지니아주는 정기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사진, 직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명수배 명단을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5) 미국의 면허증 제재 규정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지급이 불이행 될 시 면허증 및 허가증을 제한, 정지, 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s), 직업면허증(occupational licenses), 전문직면허증(professional licenses), 여가허가증(recreational licenses)이 해당되며, 총기면허증(concealed carry licenses)을 포함시키는 주도 있다.

미국은 1950년대 특정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면허증 보유 근로자가 5%를 차지했었지만, 2017년에는 그 비율이 25%에 다다르고 있다.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직업 및 전문직면허증까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양육비 회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정부별로 양육비가 1~6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때, 또는 2천불이상 연체되었을 때 각종 면허증의 정지,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양육비 채무자의 면허증이나 허가증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정부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을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의 면허증 제재 조치에 앞서 정당한 절차적 적법절차(due process procedures)를 거친다.

※ 절차적 적법절차란 개인의 자유, 신체, 재산을 제한하는 경우에 공권력은 고지(notice)와 청문(hearing)의 사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양육비가 30일 이상 연체되었을 때,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면허증'이 정지 및 취소 대상이 되며, 양육비 전액 변제 시까지 15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를 1회 발급한다. 운전면허에 한해 15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양육비 1개월 연체 또는 양육비 연체 및 미지급으로 인한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면허증'이 정지 및 취소대상이 되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일정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여야 한다. 로드아일랜드 주는 양육비가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았을 시,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면허증'이 정지 및 취소 대상이 되며 이의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가정법원 청문회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 참고로 양육비 이행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양육비 채무 부모 소재 파악→친자확인 절차→양육비 이행 명령→양육비 이행명령 검토 및 수정→양육비 수집→양육비 지급→아동 의료비용 수립과 이행)

[표 4] 미국 주정부별 양육비 미지급시 면허증 제재 규정

주정부	법령	규제 면허	사유	적법절차
앨라배마	Ala. Code §§ 30-3-170 through 30-3-179	운전 직업 전문 여가	6개월 이상연체	60일 이내 전액지불, 승인된 지불계획 합의, 소환명령 수용 또는 지불보증서 제출, 행정청문회 요청
캘리포니아	Cal. Wel. & Inst. Code § 11350.6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30일 이상 연체	150일 유효기간의 임시면허 1회 발급, 운전면허는 추가 150일 연장 가능
아이다호	Idaho Code §§ 7-1401 through 7-1417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총기	90일 또는 2,000불 이상의 연체; 소환불응	21일 이내에 연체료 납부, 지급계획 제출, 또는 청문회 일정 수립하지 않을 시 취소
노스 캐롤라이나	N.C. Gen. Stat. § 50-13.12; N.C. Gen. Stat. § 110-142 through 110-142.2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1개월 연체; 소환불응	14일 이내에 지급일정에 대한 검토요청,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로드 아일랜드	R.I. Gen. Laws § 15-11.1-1 through 15-11.1-12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여가	90일 이상 연체, 또는 건강보험 미제공	30일 이내 가정법원 청문회 서면 요청

주정부	법령	규제 면허	사유	적법절차
워싱턴	Wash. Rev. Code § 74.20A.020; Wash. Rev. Code §74.20A.320-330	사업 운전 직업 전문 전문 여가	6개월 이상의 연체	20일 이내 지급이행 일정 수립, 서면 심판진행의 청구 request in writing an adjudicative proceeding
위스콘신	N.C. Gen. Stat. § 50-13.12; N.C. Gen. Stat. § 110-142 through 110-142.2	운전 직업 전문 전문 여가	90일 연체; 소환 불응	20일 이내 행정청문회 요청 ※ 면허정지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와이오밍	Wyo. Stat. §§ 20-6-111, 20-6-112	운전 직업 전문 전문 여가	연체금이 5천불 이상; 연체일이 90일 이상일 시 행정조치로 면허 정지가능	60일 이내 청문회 요청 - 임시면허증은 120일 이내에서 발부될 수 있음

자료: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License Restrictions for Failure to Pay Child Support",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license-restrictions-for-failure-to-pay-child-support.aspx>

4. 법률 개정 과제

1) 형사처벌 규정의 마련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되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야지만 양육비 이행 명령 등이 현실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됨

현재는 법원에 의해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외국과 달리 이행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가. 「양육비이행법」의 개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동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양육비 연체 금액 및 연체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연체 금액 완납시 벌칙을 면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복지법」의 개정

양육비 미지급을 보호자의 방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이 보호자의 방임행위로 규정되면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양육비 미지급이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는 ‘보호자’, 제3조제7호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동법에 따르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아동학대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는 방임행위의 대상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방임행위의 주체는 동법 제3조제3호 “보호자”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법률, 예컨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3호의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부양의무자를 보호자에 포함시킨 입법례와 비교할 때, 「아동복지법」 제3조가 정의하고 있는 보호자는 직접 양육·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아동복지법」 제3조의 ‘보호자’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교육하는 자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이 해당 아동의 의식주 마련의 어려움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동법 제17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위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양육 책임은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에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포함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

가. 제도의 개요

양육비 대지급 제도(Advance payment of child maintenance)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아동이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 할 수 없거나,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 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있다.

나. 제도도입의 필요성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아동 생계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아동의 절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소득기준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양육 한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로 강제조치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사회규범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5.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 조치의 의의 및 필요성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변제되어야 할 채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적절한 금액이 적시에 지급되어야만 양육비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공공문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 및 한부모가족에 대해 최소한도로 개입하고 있고, 그에 따른 공공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할 제도적 장치 및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를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 간 문제로 남겨둠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곤란은 그대로 방치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양육비 지급 이행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회규범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아동복지 및 한부모가족의 빈곤예방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이 될 여지가 크다. 국가는 부양의무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마련해줄 책임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무책임으로 사회 곳곳에 요긴하게 쓰여야 할 국가재정의 지출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 양육비 이행에 관한 국가개입의 정당화는 이미 1880년대 논의되었다. 부양자가 돌보지 않는 피부양자는 국가 혹은 민간 자선단체가 부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공공자원의 ‘불필요한 지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의 무책임한 행위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조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적 곤란에 처한 가족에게 최장 60개월간의 빈곤가족 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프로그램을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할 시에도 다른 일방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국가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대지급 제도의 운영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가 적법한 공공사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때, 양육비 불이행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회규범도 수립될 수 있다.

결국,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를 강화하여 아동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여부가 공익 사안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공익’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지만, 단순한 재정상의 이익이 아니며, 각 개인의 이익의 총합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이익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불필요한 조세지출의 예방, 부양의무에 관한 사회규범의 수립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은 공익사안으로서의 충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행정작용의 정당화 사유이자 국민의 기본권 및 권익 제한의 법률적 근거로서의 공익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판단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불이행 행위를 공익의 개념 내에 포섭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토론
01어떤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부제 - 법은 멀고 아이는 자란다)

이 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2018년 9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부모 가정의 양육 당사자들이,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아동 생존권 보호의 핵심인 ‘양육비’에 대한 사회 변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2018년 7월에 개설된 직후 사이트 자원 봉사자인 영원한 자유인(구본창)의 블로그를 통해 양육비 관련 소식을 접하며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이 모였고, 단체를 설립하여 자력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활동은 2015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출범한 국가 기관의 절차 기간과 2018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사이트 개설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의 법적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한 사이클을 밟는 동안 평균 2년 4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기관을 통한 진행 마저 결과가 없어 좌절감이 팽배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절차는 간단하고 강제력 있는 규제수단이 되어준 신상공개 사이트가 개설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확보에 실패한 원인은 기관의 문제가 아닌 강제력 없는 현행 법과 행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었습니다.

현행법상의 단계별 절차를 모두 밟고도, 양육비는 받지 못한 채 종결 통보를 받게 된 양육자들의 경험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10년, 20년의 세월을 보낸 사례자들과 같이 10년, 20년이 흐른 미래에도 대한민국 한부모 가정의 아동의 삶과 양육환경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법률안의 제정, 시행 절차의 간소화, 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강화 그리고 집행력 있는 역할로 범위가 확대되길 바라며 근본 해결책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리에서,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대통령의 공약” “아동의 생존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 “양육비 법안 심의 통과 촉구” 등등의 구호를 수없이 외쳤습니다.

도저히 현행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신상공개 사이트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양육자들은 당시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서 논란이 일던 신상공개 제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컸고, 거리에 나와 미지급 해결 촉구 활동을 하는 것이 무척 참담하고 떨렸지만 시시각각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까지 오르며 사회에 주목된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함께 사회변화를 위한 단체의 여러 활동으로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입법의 필요성이 알려졌고, 아동 생존권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분들 덕분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 지급이 불이행 될 시 면허증 및 허가증을 제한, 정지, 취소하는 법적·행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해 온 결과,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추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로 몰려 나왔던 양육자와 양육비 활동가들은 여전히 길고 지루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자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다소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한부모 가정은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한번도 받지 못한 가정이 73.1%라는 실정은 현행 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고의적 회피”와 “자녀와의 관계단절”의 고통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읍소하는 미지급자의 SNS에는 외제차와 골프, 해외 여행과 각종 명품 사진들로 넘쳐 납니다.

이를 보고 분노한 양육자가 미지급자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가서 양육비 이행촉구 1인 시위나 집회라도 할라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폭언과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양육자는 또 다른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인 무책임한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교육적 방임 유기는 물론 정서적 학대를 서슴치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녀에게 “정신병자”라고 하거나 어린 자녀에게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인 큰 상처를 입히고도 나몰라라 하는 비정한 아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죽었다고 전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부모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자녀의 성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회원의 양육비 미지급 사례와 사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오른 대학병원의 간호사 직업을 가진 한 엄마는 아이가 첫돌을 넘긴 때 헤어진 이후 한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고,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모르게 자라며 엄마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5살 아들에게 바로 얼마 전 나타난 엄마의 모습은 TV 속 ‘유명 럭셔리 카드의 화려한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광고를 본 양육자가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모델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무겁게 인식 및 정서적 관점을 고려해 광고물 집행 중지를 결정하고 모든 광고물에서 빠르게 삭제 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자인 엄마는 양육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양육자의 문제 제기로 해당 카드사 쪽에서 사실확인 요청이 들어온 것과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가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양육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양육비 문제를 고소 분쟁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양육비가 자녀 생존권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아동 생존권 보호라는 어른들의 의무가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양육비 채무를 개인사로 다루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는 아동의 생존권보다 어른들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쟁의 현실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2) 암 투병 중에 이혼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 온 저희 단체의 한 회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방관을 견디다 못해 2015년 이혼하고 매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처음 한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경, 그녀는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마지막 남은 시간을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자택에서 아이들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니 아이들과의 생활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항암 투병 생활 중에도 가발을 쓰고 직장을 다니며 아들 둘을 키웠고 아빠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그녀에 비해, 전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를 왜 안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은행에 나갈 돈도 있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주냐. 거지같은 XX들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냐”라는 등 죽음을 앞둔 양육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이기적인 행태로만 일관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인 회원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양육비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에 우리와 함께했고, 엄마 없이 남겨질 아들들을 걱정하며 양육비 이행강화 발의 법안이 통과 되기를 절절히 바랬습니다.

그녀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지난 5월 6일은 20대 국회의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 법률안이 여가위 심사를 통과한 날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미루도록 붙잡아 끌었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주길 바랬지만, 그토록 바라던 법안 의결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눈이 시리도록 하늘이 푸르던 지난 5월 12일, 열한 살, 열 살의 두 아이만 남긴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당일까지 남겨질 두 아들의 양육비를 받게 해주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리고 투쟁해야 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막으려면 양육비 문제를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 두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양육자를 두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변명에 면책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근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국가가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강제할 방법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프랑스인이자 방송인인 A씨의 사례도 소개 드립니다.

2010년 조정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10년간 홀로 아들 둘을 양육하였지만 역시 전 남편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어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5년간 지속되자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자마자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출국해버린 전남편의 소득파악도 어렵고 주지 않고 버티는 전 남편으로부터 이행을 확보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패, 이후 법원은 감치 집행을 명령을 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구인하지 못한 채 집행 유효기간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하고 나니 인생이 너무나 확 바뀌더라. . 아이들에게는 이혼 전과 후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10년간 정말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기대했던 감치 명령이 기각되었을 때는 크게 좌절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한부모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

며칠전 아버지 병환이 심해 프랑스로 가야 한다며 출국을 하기 전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양육비 법안 발의안의 진행이 어찌 되어가는지,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항소심 등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합시다.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저와 아이들에게는 정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만이 아닌 한국의 다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입법이 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녀오는 대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이행확보 절차 진행 당시 우리나라에도 출국금지 제한 규제, 형사처벌법이 있었다면 그녀의 두 아들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전남편의 SNS 속, 골프를 치고 여가를 즐기는 듯한 사진들, 즐거운 일상을 나누는 챗들이 떠올라 무척 속이 상하고 착잡합니다. 그녀의 사례와 같이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해외로 도피하여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비양육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고 그 중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자들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가장 과중한 처벌은 고작 감치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다수는 양육비 미지급 시 구금이나 징역등의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위를 형사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의 핵심 내용이고, 아동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양육비 채무를 사인 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적시에 변제되어야 할 공적 채무로 인정하여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등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를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전주혜 의원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국회의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조치는 형사처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양육비는 사인 간의 채무이자 이혼 가정의 “민사”라는 이유로 법무부 등 정부가 반대해 왔습니다.

아동의 복리와 생존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채 시간만 가는 사이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외침에 눈과 귀를 막지 말고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 및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단체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담당업무의 고충을 덜고 아동 생존권 보호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전주혜 의원실과 미래통합당 저출생 특별위원회, 발제를 해주신 허민숙 입법조사관님, 토론자인 이시정 변호사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노현선 본부장님, 여성가족부 조신숙 과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론02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문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토론
02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1. 이행절차의 간소화

20대 국회를 통과한 운전면허 정지법안은, 미지급자가 감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미지급시에만 가능

문제점 1

이행명령 신청~감치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니 양육자의 고통이 2년 이상 지속

문제점 2

상대가 위장전입을 하면 소송 진행이 더 지연되고, 공시송달로는 감치 판결이 거의 나지 않으므로 운전 면허정지가 불가능

2. 이행절차의 간소화가 중요한 이유

〈근거 : 배파사이트의 사례들〉

- 배파사이트의 사전 통보만으로 해결된 사례들 (2월~7월 중순까지 약 360건 해결)
- 미지급자의 주요 직업들 : 공무원/교사/4대보험 가입된 기업체 근무자들
- 이들이 배파 등재 전에는 왜 지급하지 않았는가?
 - ※ 소송의 기간과 비용의 문제
 - ※ 양육비 이행원의 처리 기간이 평균 2년
 - 구청도 직원 400명
 - 전국의 153만 한부모가정을 200명 이하인 이행원이 커버하는 것이 한계
 - ※ 이행명령 소송 시 밀린 양육비를 30%~50% 감액
 - ※ 배파사이트는 재등재 5분

3. 국가 대지급제 도입 전에 미지급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도입과 안착이 필요

문제점 1

양육비 4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 시 매년 5천억이 소요되므로 예산 마련의 어려움

문제점 2

무책임한 부모들의 잘못으로 생긴 양육비 미지급을 왜 국민혈세로 해결하는가라는 반대여론이 생길 가능성

- * 대지급제를 시행한 독일도 대지급후, 국가가 미지급자들에게 회수하는 비율이 23% 이하라 사실상의 복지예산
- * 제재 조치없이 자발적인 지급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

4.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이유

〈근거 : 배파사이트의 사례들〉

- 배파사이트의 총 해결건수 : 520건
 - * 사전통보만으로 : 360건
 - * 신상공개로 : 160건
- 자발적인 해결 : 1% 미만
- 신상공개 / SNS 촉구 / 1인 시위 압박으로 해결이 99%
- 운전면허 정지 / 형사처벌 / 해외 출국금지의 불이익으로 무책임한 부모들의 제재가 선행된 뒤 대지급제 검토가 필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재조치 확대의 필요성

이시정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변호사

토론
03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재조치 확대의 필요성

이시정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 변호사)

1. 들어가며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으로 약칭)이 시행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안이 도입,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양육비는 단순히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 사안에 해당하는바, 양육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령에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평가하는지는 양육비 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토론자는 현재 시행(예정) 중인 양육비이행법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제재조치 확대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2. 행정제재조치 추가 도입의 필요성

가.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한계

2020. 6. 9. 일부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1, 2항(이하 ‘개정법 규정’이라 약칭)에 따르면¹⁷⁾,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불

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이행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이 개정법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18)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가사소송법상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명령에 따른 정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감치명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개정법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인 감치명령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치명령을 대체하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제재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치명령의 한계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보완될 수 있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양육비채권자가 감치명령을 받아내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양육비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며 감치명령 요건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정법 규정 제21조의3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어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고 있는바, 면허가 직접적으로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정지처분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듯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쉽지 않을뿐더러 직업과 연관된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박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감치명령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활용가능하게 한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추가 도입이 필요한 행정제재

양육비 채권자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의 경우는 복지제도를 정비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현실적으로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양육비 채무자 각자 그 처한 상황이나 수준이 다르므로 실질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마련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출국금지나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조치는 그 도입이 시급하다. 출국금지 조치,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조치는 양육비채무가 단순한 사적채무가 아니라는 점 및 양육비 이행법 제20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동법 제21조(채납자료의 제공) 규정 도입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써, 위 운전면허 정지 조치의 문제점 및 한계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단공개 조치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70조¹⁹⁾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19)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그 과정이 위 감치명령을 받기까지의 경우처럼 쉽지 않고, 신상이 공개되는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의 신용하락을 통한 간접강제 효과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일반 채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실제 활용도 및 그 실효성도 크지 않으므로 그와는 별도의 명단공개조치 규정 및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형사처벌규정 도입에 관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와는 달리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으로써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일 수 있다.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육비가 사적채무가 아닌 공적채무이고, 단순한 사인 간 문제가 아닌 공익 사안으로 보는 관점에서라면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규정을 도입하려면 그 구성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감치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그 구성요건을 좀 더 간단·명료하게 구성하여, 기존 비효율적인 제도를 사문화시키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결어

양육비 채권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양육비 채권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거나 조정, 재판 등 법원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원활하게 채권이 확보되겠으나 이 경우 양육비 미이행시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조정, 재판 등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대방이 다투는 지 여부에 따라 그 채권 확보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상대방이 방어권을 악용하기도 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어렵게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다시 이행명령 등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게 법적제재를 취하는 것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그 과정도 어려울뿐더러 그 효과도 미미하다.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그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장과정 내내 법원 절차에 매달려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 아동이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은 아동일 수밖에 없고, 아동의 피해는 결국 국가적·사회적인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발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있는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좀 더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양육비 이행 강화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문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 변호사

토론
04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 변호사)

1. 들어가며

먼저,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동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양육비 이행여부가 공익적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국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허민숙 입법조사관님의 제언에 깊게 공감하며, 2014.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합니다) 제정 이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개선 경과와 2020. 5.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방향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개선 경과

2014. 3. 25.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2015. 3. 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 3. 2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 12. 24.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되었고, 주소·근무지 조회 범위가 양육비 채무자에서 비양육부·모로 확대되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 8. 2.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신설로 감치 집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9. 12. 기준으로 약 20,157가구의 29,030명의 자녀에 대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2015년 개원 당시 21.2%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행금액 약 666억원 이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기본구조는 소송지원 중심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3. 2020. 6. 9. 양육비이행법 개정

2020. 6. 9.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2021. 6. 10.부터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 채무자의 본인 동의가 없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설치·운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개정에 따른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가. 감치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감치명령은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이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의무불이행자를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인하도록 결정하는 것으로(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의 집행은 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구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감치 집행장은 경찰에 송부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에게 감치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이행법 제16조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확인 및 조사권한을 근거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감치 성공률은 약 16%으로 법정감치율 9%보다는 높지만 집행률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감치명령장 접수 시 지역경찰의 조치사항」 마련 등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 근거를 마련하였고 감치집행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장기동반 활동 지역과 운영 시간대를 확대하여 주말과 야간에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치집행률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나. 운전면허 정지요청

2021. 6. 10.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수입원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요청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감치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운전면허 정지 요청에 관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가정법원 판사님들과의 간담회 운영 및 주요 지방법원 방문, 위탁기관과의 회의 등을 통해 개정법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4. 나가며

2020. 6. 9.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이행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 강화,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한 신청인의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 한부모이며, 이 경우 비양육부·모의 소득도 비슷한 정도의 저소득층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같이 압류를 할 수 없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²⁰⁾ 소송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²¹⁾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서 지원 자녀 수는 제한적이고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 방안 또는 대지급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소득활동을 하거나, 재혼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무력화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절하고 확실한 제재방안이 도입되어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월 185만 원 미만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21) OECD(2011), 「OECD 국가의 가족정책-보다 향상된 가족정책적 대안들」, p230도 저소득 비동거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의 효과가 최소화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0
------------	-----

발의연월일 : 2020. 6. 25.

발 의 자 : 전주혜 · 이 용 · 황보승희

조태용 · 서범수 · 이주환

강대식 · 윤창현 · 김미애

최승재 · 한무경 · 윤주경

허은아 · 양금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 양육비 이행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2019년 기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직권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그 결과 통지 등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공개 기준,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u>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u>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 재산의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직권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u> <u>④ 그 밖에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그 결과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21조의5(양육비 채무자의 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u>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u>

제27조(벌칙) ①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주어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공개 기준,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정책토론회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최

국회의원 전주혜

주관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